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정원 1명(9급 1명)과 광산안전사무소 정원 1명(9급 1명) 및 무역위원회 정원 1명(9급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며, 통상 및 에너지 분야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11명(8급 9명, 9급 2명)의 직급을 상향조정(7급 10명, 8급 1명)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에 관한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우주항공청으로 이체하며, 에너지분야 등의 기반시설 안전관리 협업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산업통상자원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규제샌드박스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중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 등 7개 조직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광물자원팀장, 규제샌드박스팀장, 국제표준화기구 전략대응팀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산업정책과·산업일자리혁신과·산업환경과·산업공급망정책과·소재부품장비개발과·철강세라믹과·기계로봇항공과·자동차과·조선해양플랜트과·엔지니어링디자인과·반도체과·배터리전기전자과·바이오융합산업과·섬유탄소나노과·화학산업팀·디스플레이가전팀”을 “산업정책과·산업일자리혁신과·산업환경과·산업공급망정책과·소재부품장비개발과·철강세라믹과·기계로봇제조정책과·자동차과·조선해양플랜트과·엔지니어링디자인과·반도체과·배터리전기전자과·바이오융합산업과·섬유탄소나노과·화학산업팀·디스플레이가전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계로봇항공과장”을 “기계로봇제조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일반기계·장비·로봇·항공”을 “일반기계·장비·로봇”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항제4호 중 “의료용, 항공·우주용”을 “의료용,”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1호를 제20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954”를 “9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943”을 “945”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서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78”을 “280”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

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91”을 “190”으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90 다음에 “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1”를 신설하고, “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1”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농업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항공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60”을 “69”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2 다음에 “운전주사보 1”를 신설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통계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사서서기·보건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4”를 “4”로 하고, 운전서기 “1”을 “2”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954”를 “9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943”을 “945”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303”을 “305”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83”을 “182”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82 다음에 “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1”를 신설하고, “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

주사·전산주사·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1”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농업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항공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48”을 “57”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2 다음에 “운전주사보 1”를 신설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통계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사서서기·보건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4”를 “4”로 하고, 운전서기 “1”을 “2”로 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를 신설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5”를 각각 “14”로 하고, “운전서기보 1”를 삭제하며, 총계 및 일반직 계 “35”를 각각 “34”로 하고, 운전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5”를 각각 “14”로 하고, “운전서기보 1”를 삭제하며, 총계 및 일반직 계 “35”를 각각 “34”로 하고, 운전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5 4)의 평가기간란, 같은 표 5)의 평가기간란, 같은 표 6)의 평가기간란, 같은 표 7)의 평가기간란, 같은 표 8)의 평가기간란, 같은 표 9)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표 10)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3월 31일”을 각각 “2026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4월 30일”을 “2026년 4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7항, 제8조제14항, 제8조제14항제28호, 제8조제14항제29호, 제8조제14항제30호, 제8조제14항제31호, 제8조제14항제32호, 제8조제14항제37호, 제8조제2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26일까지는 별표3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며, 별표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26일까지는 별표3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 기능 등이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정원 중 3인(4급 또는 5급 1, 5급 1, 6급 1)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우주항공청으로 이체한다.

[별표 3의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959
정무직 계	4
장관	1
본부장	1
차관	2
별정직 계	7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장관정책보좌관)	2
비서(6급 상당)	1
비서(8급 상당)	1
비서(9급 상당)	2
일반직 계	948
고위공무원단	3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원	17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 또는 수석전문관	5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원	5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 또는 수석전문관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 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 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 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부감사관· 공업연구원·학예연구원·편사연구원·농업연구원· 임업연구원·해양수산연구원·기상연구원·보건연구 관·환경연구원 또는 시설연구원	73
행정사무관	64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 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 ·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 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 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 ·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 관·학예연구원·편사연구원·농업연구원·임업연구 관·해양수산연구원·기상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 연구원 또는 시설연구원	281
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 산사무관·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공업연구원	6
전산사무관	1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주사	24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 복지주사 · 감사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 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 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91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1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 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 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 사보	69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 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2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5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통계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4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통계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기 · 방재	1

안전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운전서기	2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9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통계서기보 · 환경서기보 · 시 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 사서서기보 · 보건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4
운전서기보	7
사무운영주사	1
사무운영서기보	6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통계전문관 · 공업전문관 · 시 설전문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18
연구사	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1

[별표 3의4]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959
정무직 계	4
장관	1
본부장	1
차관	2
별정직 계	7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장관정책보좌관)	2
비서(6급 상당)	1
비서(8급 상당)	1
비서(9급 상당)	2
일반직 계	943
고위공무원단	3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7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5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 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 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 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부감사관· 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 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 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3
행정사무관	6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 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 ·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 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 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 ·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 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 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 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306
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 산사무관·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
전산사무관	1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주사	24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 복지주사 · 감사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 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 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83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1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 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 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 사보	57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 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2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2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통계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기 또는	4

방재안전서기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통계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기 · 방재 안전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1
운전서기	2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8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통계서기보 · 환경서기보 · 시 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 사서서기보 · 보건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4
운전서기보	7
사무운영주사	1
사무운영서기보	6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통계전문관 · 공업전문관 · 시 설전문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18
연구사	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2조 관련)

제42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산업정책실) ① ~ ⑥ (생략)	제8조(산업정책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산업정책실에 <u>산업정책과 · 산업일자리혁신과 · 산업환경과 · 산업공급망정책과 · 소재부품 장비개발과 · 철강세라믹과 · 기계로봇항공과 · 자동차과 · 조선해양플랜트과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반도체과 · 배터리전기전자과 · 바이오융합산업과 · 섬유탄소나노과 · 화학산업팀 · 디스플레이가전팀</u> 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u>산업정책과 · 산업일자리혁신과 · 산업환경과 · 산업공급망정책과 · 소재부품 장비개발과 · 철강세라믹과 · 기계로봇제조정책과 · 자동차과 · 조선해양플랜트과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반도체과 · 배터리전기전자과 · 바이오융합산업과 · 섬유탄소나노과 · 화학산업팀 · 디스플레이가전팀</u> ----- ----- ----- ----- -----.
⑧ ~ ⑬ (생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⑭ <u>기계로봇항공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u>기계로봇제조정책과</u> 장----- -----.
1. ~ 27. (생략)	1. ~ 27. (현행과 같음)
28. <u>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u>	<삭 제>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 (생략)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원산업정책국에 자원안보 정책과·석유산업과·가스산업 과·석탄산업과 및 광물자원팀 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 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광물자원팀장은 <u>과학기술서기 관·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u>	② ----- ----- ----- ----- ----- ----- ----- <u>과학기술서기관</u> · 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행 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광물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21. (생략)	20. (현행 제21호와 같음)
제18조(표준정책국) ① (생략)	제18조(표준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표준정책국에 표준정책과· 국제표준협력과·산업표준혁신 과·전기전자정보표준과·기계 융합산업표준과·바이오화학서 비스표준과 및 국제표준화기구 전략대응팀을 두되, 표준정책과 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 관·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	② ----- ----- ----- ----- ----- ----- -----

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 연구관으로, 국제표준협력과장 · 산업표준혁신과장·전기전자 정보표준과장·기계융합산업표 준과장·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 과장 및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 응팀장은 <u>과학기술서기관·서 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u> <u>으로 보한다.</u>	----- ----- ----- ----- ----- ----- <u>과학기술서기관·서기 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 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 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 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 다.</u>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42조(한시정원) ①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 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 통상자원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 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국	제42조(한시정원) <삭 제>

<u>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u> ② (생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규제샌드박스팀은 <u>2024년 4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6년 4월 30일</u>-----. ②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954</u>	. <u>956</u>	+2
일반직 계	. . <u>943</u> . .	. . <u>945</u> . .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 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 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 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 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 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 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 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 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 ·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 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 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 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u>278</u>	<u>280</u>	+2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 ·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 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 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 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 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 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 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 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 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 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 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u>191</u>	<u>190</u>	-1
<u>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u> <u>·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u> <u>신주사·사서주사</u> 또는 <u>공업연구사</u>	<신 설>	<u>11</u>	+11
<u>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u> <u>·시설주사·전산주사·통신주</u> <u>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u>	<u>11</u>	<삭 제>	-11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 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 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 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 사회복지주사보·농업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항공주사보·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u>60</u>	<u>69</u>	+9
·	·	·	
<u>운전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행정서기·공업서기·통계서기 ·환경서기·시설서기·전산서 기·방송통신서기·사서서기· 보건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u>14</u>	<u>4</u>	-10
·	·	·	
<u>운전서기</u>	<u>1</u>	<u>2</u>	+1
·	·	·	
·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954</u>	· <u>956</u>	+2
일반직 계	· · · <u>943</u>	· · · <u>945</u>	+2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 ·	<u>303</u>	<u>305</u>	+2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	<u>183</u>	<u>182</u>	-1	
· ·	·	·		
· ·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u>48</u>	<u>57</u>	+9
·	·	·	
<u>운전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통계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 기 · 방송통신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u>14</u>	<u>4</u>	-10
·	·	·	
<u>운전서기</u>	<u>1</u>	<u>2</u>	+1
·	·	·	
·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총 계	<u>15</u>	<u>14</u>	-1
일반직 계	<u>15</u>	<u>14</u>	-1
·	·	·	
·	·	·	
<u>운전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총 계	<u>35</u>	<u>34</u>	-1
일반직 계	<u>35</u>	<u>34</u>	-1
·	·	·	
·	·	·	
<u>운전서기보</u>	<u>3</u>	<u>2</u>	-1
·	·	·	
·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총계			<u>15</u>		<u>14</u>	-1	
일반직	계		<u>15</u>		<u>14</u>	-1	
		•		•	•		
		•		•	•		
운전서기보			<u>1</u>		<u>0</u>	-1	
		•		•	•		
		•		•	•		
총계			<u>35</u>		<u>34</u>	-1	
일반직	계		<u>35</u>		<u>34</u>	-1	
		•		•	•		
		•		•	•		
운전서기보			<u>3</u>		<u>2</u>	-1	
		•		•	•		
		•		•	•		